

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2536호

2026년 7월 27일 (월)

차 례

고시 · 공고

○ 파주시 고시 제2026-304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1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파 주 시

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

파주시 고시 제2023-283(2023. 7. 28.)호로 지정된 파주 희망프로젝트 2단계 일반산업단지(반환공여구역에 따른 주변지역) 예정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시까지 계획적 개발과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27일

파 주 시 장

1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면적

- 가. 위치 :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350-1번지 일원
- 나. 면적 : 510,361㎡ (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주변 지역)

2. 제한사유 : 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향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,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, 계획적·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.

3. 제한기간 (변경)

- 가. (기정) 2023. 7. 28. ~ 2026. 7. 27. (고시일로부터 3년)
- (변경) 2023. 7. 28. ~ 2028. 7. 27. (기간연장 2년)

4. 제한대상 행위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
- 나. 제한대상 제외 행위
 - 1)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
 - 2)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·옹벽 및 사방시설,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
 - 3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하는 공익목적의 행위
 - 4)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해 종전 규모범위 내 건축허가(신고)
 - 5)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
 - 6) 기타 경미한 개발행위로서 시장이 행위제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

5. 제한근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

6. 열람장소 :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s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기업지원과(☎031-940-534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